

기안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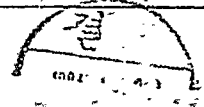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공 1316-94	(전화번호 222)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상공 1316-94			
시행일자	84. 1. 27			
보존연한				
보조기관	상공계량	합	조	결재 1984. 1. 27 상공과장
기안책임자	이종길	84. 1. 28 (김병철)		
경유 수신 참조	발신 장소	발 신	동 계	1984. 1. 27 상공과장
제목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 건축물기대할 권 1. 발권: 광남. 산업 1316-2227 (84. 1. 26) 호 2. 이대로 발권 상설시각 개설 취가이 다른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 회보하여 주시기 바 랍게나. 가.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 (노상) 나. 사업구획: 확보주택 (3) 대를 광택 수 다. 구획: 광남주택 4호 2번의 외 2/1 획리 라. 사업계획 마. 대리: 193. 883. 20 222 바. 건축면적: 377. 882 (전체율 15. 7%) 사. 이차: 2436 세대 아. 상가: 12. 76/1 이 자. 사업기간: 82. 5. 4 ~ 84.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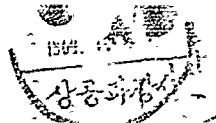
나. 권의 은의

1)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위와 같이 :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판매 시설로 되어 있고, 동사업
 승인 조건의 "판매 시설 상가 시설 허가금 지급 후 개설할 것"
 으로 명시 되어 : 있는 경우, 동법 제 33조 제 ④항 제 1호나 주
 권의 의하여 동사업 계획의 의한 "상가" 시설로 결정 고지 된 것
 으로 가부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이 상가법에 의한 허가조건
 만 갖추면 허가 처리가 가능 한지의 여부와 동건물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한이 없이 상가로 표시 된 경우 이상하
 는 건축법상 상가 또는 판매 시설과 같은 개념인지 여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 ④항 제 1호나}
 2)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판매 시설로 되어 있고, 별다른 승인 조건이 명시 되어 ~~있~~
 경우 이상하 (또는 판매 시설)의 상가 시설 허가금 선형 할 경우
 위 권의 제 1)항과 같이 상가법상 허가 조건만 갖추면 허가
 처리가 ~~가능 한지~~ 가능 한지 이하면, 동사업 계획의 의한
 동사업 계획 시설 (상가) 결정을 별도로 받으 추 처리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의견

1) 권의 1)항에 대하여 :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 제 ④
 항의 규정의 의하여 판매 시설 (1,500㎡ 이상)으로 이상함을 승인
 받고, 상가 시설 허가금 받으리 승인 조건이 있다면 동법 같은 조
 제 ④항의 규정의 의하여 동사업 계획의 의한 동사업 계획 시설
 (상가)를 결정 된것으로 보고 상가법상 허가 조건만 갖추면 가능
 하하고 다를 리며, 이 사업 승인이 상가에 대한 용도를 구체적
 으로 명시 한이 없이 상가로 표시 된것은 인정 기판의 변천





취리상 종선이 우리 관으로 취소한 전후방상 등등을 명시 하여야 된다고 사클림.

2) 권의 리항이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항
과 동제 4항의 규정의 의하여. 이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 받아
시각 배설 회가를 받도록 회가 큰간을 부여 하여야 한다고 사클림
이러한 상가 (할배시상) ²³⁷의 ²³⁷분양 할다면 구사 시장이 형성되고
리. 큰 집합 관으로 한정 리로가 불능함

첨부. 상공회 1316-2207 (54.1.22) 호 시정 일부 글.

유신회. 법무 관의 반. 주택 계획바라.

서울특별시

주 기 452-55 (724-7051)

송신 상공과장

제목 질의회신

계	상공과장	상공과장	31. 1월	공공관
[Handwritten sig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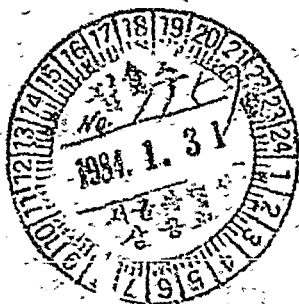
1. 상공 1316-94호 (84. 1. 27)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질의한 시장개설허가 관련한 귀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과 의견을 회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 31조, 동법시행령 제 30조의 2, 별표 4, 2호 나목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시장이라는 시설이 별도로 필요 시설이 아니라 상가법,령 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시설이 외국에서 관장하는 시장법이 적용될 경우 별도의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야 상대방을 할수 있으므로 귀국의 요청에 따라서 상가를 시장개설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 하였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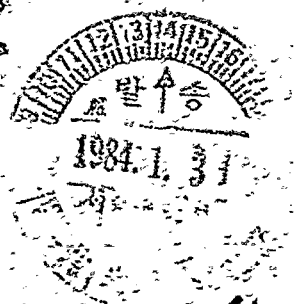
나. 위라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동시행령 제 32조 제 2항 제 2호에 의거 설치되는 판매시설은 시장법에 의한 시설을 전제한 것임으로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사업승인을 한것인바, 당연히 시장개설을 하여야 할것임

다. 건축법상 판매시설인 백화점, 시장, 상점과 주택건설촉진법상 판매시설 (82. 5. 25 이전 "상가")은 그 설치 기준이 다르므로 도시계획상 지역, 지구 불분하고 대상 세대규모에 맞게 복리시설로 승인처리 한 것임.



주 지방행정사무관

[Handwritten signature]



서울특별시

법무 180-
수신 상공과장
제목 질의 회답

307 1984. 1. 31
상공과장
공과장
공과장

1. 귀과에서 상공 1316-94 (1984. 1. 27)호로 질의한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답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없이 관계법에 의한 허가 절차 및 요건을 갖추면 허가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이란 어린이 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장, 집회소, 기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되어 있는바 동사안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없이 "상가"로만 표시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다면 복리시설중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업계획 승인부서에 승인의 취지를 명백히 파악하여 처리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지방행정사무관 이상돈

법무 담당관

